정규직 근로계약서

사용자	상호	주식회사 다스버스			대표자	박 길 홍	
(회사)	주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 길 9-4					
근로자	성명	양 진 호	직급	전임	생년월일	1998년 02월 17일	
	주소	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93, 605 동 601 호(작전동, 까치마을 태화아파트)					
	전화	010-9457-2533					

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,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.

제 1 조(근로계약기간과 근로자의 의무)

- ① 근로계약기간은 2024년 08월 12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
- ②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회사의 제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회사가 지시한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 2 조(수습기간)

-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,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.
- ② 사용자는 수습기간 동안 근무자의 역량, 인품, 근무태도, 타 근로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습기간 중에라도 수습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, 반대로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수습을 조기 종료시킬 수 있다.
- ③ 사용자는 제 ①항의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, 회사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유발한 경우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.

제 3 조(근무장소 및 업무내용)

- ① 근무장소는 주식회사 다스버스 본사 또는 지점으로 한다.
- ② 담당업무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타 사용자가 지시하는 부수업무로 한다.
- ③ 사용자는 업무상 또는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①항과 제 ②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
제 4 조(근로시간 및 휴게시간)

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 단, 업무의 특성 또는 사업장에 따라 필요한 경우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소정근로일	<u>주 5일, 40시간</u>	
업무시간	업무 시작 시간대: 09:30 업무 종료 시간대: 18:30	

휴게시간	12:00~13:00 범위 내에서 1시간을 활용한다.
	(근로시간 4시간 기준, 30분 휴게시간이 원칙)

- ② ①항에 명시된 시간 외에 "사용자"는 "근로자"에게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, 연장근로,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"근로자"는 이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.
- ③ 사용자는 제 1 항의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, 야간 및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7 조 (보상 휴가제)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수 있다.
- ④ 연장근로의 경우, 당일 22 시부터 익일 06 시 사이까지 철야 근무 시 해당 관리자에게 보고 후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 5 조(휴일)

- ① 주휴일과 근로기준법 제 55 조(휴일) 제 2 항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"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.
- ②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. 단, 근로자가 1 주동안 제 4 조 제 ①항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.
- ③ 제 ①항의 주휴일은 회사의 운영상황 및 업무 스케줄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, 조정 시에는 사전에 공지한다.
- ④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 1일의 휴일로 처리한다.
- ⑤ 기타 직장이 직종별로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 6 조(연차유급휴가)

- 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르며 사용자는 1 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 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. 1 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 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, 3 년 이상 계속 근로자는 최초 1 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 년에 대하여 1 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 일을 한도로 한다.
- ② 제①항의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61 조(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)과 근로 기준법 제 62 조(유급휴가의 대체)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 7 조(임금)

① 월 급여 총액은 금 3,333,333 원으로 하며 임금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월 지급액	지급기준	비고
기본급	3,133,333 원	월 209 시간 기준	
식 대	200,000 원	식사가 근로자 부담인 경우	비과세 항목
차량유지비	원	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	비과세 항목
연구수당	원	기업부설연구소 등록된 자에 한하여 지급	비과세 항목

합계 3,333,333 원 공제 전 금액

-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 임금에서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.
- ③ 임금의 지금은 매월 1 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여 말일에 근로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직접 지급할 수 있다.
- ④ 근로자는 본인 및 타인의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료 등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⑤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100% 지급한다.
- ⑥ 비주기적으로 업무량이 집중되는 동시에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는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근로시간 및 수당 확정이 곤란하므로 계산 편의 및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포괄연봉제로 한다.

제 8 조(퇴직 및 퇴직 급여)

- ①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30 일 이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퇴직일까지 업무 인수 인계를 충실히 거쳐야 한다.
- ② 근로자는 제 ①항의 기간을 위반한 일방적 퇴직 혹은 불성실한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기친 경우에는 근로자는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- ③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계속근로연수 1 년에 대하여 30 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. 단, 사용 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퇴직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퇴직 연금 규약에 따른다.
- ④ 근로자가 관계사 간 이동 시,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기존의 근무조건, 연차, 급여, 퇴직급여 등을 유지할 수 있으며,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변경된 법인에서 운용 중인 퇴직연금 운용기관으로 이관하여 퇴직급여 관리 및 지급하도록 한다.

제 9 조(비밀유지의무)

- ① 근로자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근로자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회사 및 고객에 대한 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 ①항 내지 제 ②항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에는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
제 10 조(근로계약 해지사유)

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1.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여 해고된 경우
- 2. 학력, 경력을 위조하여 허위로 입사한 경우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조퇴 또는 외출, 결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
- 4.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
- 5. 기타 법령 및 사회상규를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계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

제 11 조(기타)

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, 취업규칙, 기타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12 조(근로계약서의 교부)

사용자는 근로자와 본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한다.

2024년 08월 12일

	사용자(회사)			근로자
주	독식회사 다스버스		성 명	양진 호 (서명 또는 인)
대표자	박 길 홍	5 5 5 12	0 0	000 ± (M 0 ±01 12)
		77 10		